

석유사업법 시행령 개정령 및 시행규칙 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통상산업부 -

석유정제업자, 수출입업자의 석유저장시설보유기준이 현행 총수입량의 45일분에서 내수판매량 60일분 이상으로 개선된다.

또 주유소와 정유사간 직거래가 허용되며 석유일반대리점의 등록요건중 시설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통상산업부는 지난 9월 2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한 석유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주요개정(안)을 보면 석유비축능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비축의무의 원활한 이행을 유도하기 위해 석유사업법에서 신설된 석유비축대행업자의 저장시설등록요건을 석유(원유 및 제품)저장시설 1만k 이상, 액화석유가스는 3천톤 이상으로 규정했으며 민간 비축의무 한도량을 현행 30일에서 60일로 상향 조정했다.

또 현행 3단계로 되어 있는 석유유통구조(정유사대리점·주유소·일반판매점)를 자율화해 주유소와 정유사간 직거래를 가능토록 하고 석유정제업자등이 판매하는 석유제품의 품질규격공시 세부절차규정을 신설했다.

특히 유사회발유를 취급·판매하다 적발된 업소에 대해선 위반내용의 공표와 함께 영업정지처분 뿐만아니라 과징금도 부과할 수 있도록 처분조항을 강화했다.

이밖에 환경규제강화에 따른 수입부과금 환금대상에 현행 발전용 LNG(액화천연가스) 및 저유황중유 외에 액화석유가스(LPG)도 추가했다.

한편 통상산업부는 앞으로 20일간의 입법예고기간 동안 이 시행령, 시행규칙개정(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오는 10월초 경제장·차관 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입법예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통상산업부공고 제1996- 105호

석유사업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법제업무운영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6년 9월 2일

통상산업부장관

석유사업법시행령개정령 및 시행규칙 개정규칙(안)입법예고

1. 개정사유

석유사업법 전문개정('95. 12. 29. 공포, 법률 제5, 092호)에 맞춰 석유정제업, 석유수출입업, 석유판매업의 등록요건 및 절차를 정하고 민간 석유비축수준을 제고하며 석유품질관리제도를 강화하는 한편, 그 간 석유사업법령운영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석유사업자의 등록요건 설정

- (1) 석유정제업, 수출입업의 등록요건으로서 저장 시설 기준을 현재 총수입량 45일분에서 내수 판매량 60일분이상으로 개선하되 석유산업의 특성을 고려, 내수·수출간 과도한 불균형 방지를 위해 석유정제업자는 생산량 45일분이상 기준을 병과하도록 함.
- (2) 석유대리점의 활성화를 위하여 일반대리점의 등록요건으로서 저장시설 및 수송장비 기준을 일부 완화함.

나. 석유비축제도 개선

- (1) 신설되는 석유비축대행업의 저장시설 등록 요건으로서 원유 및 석유제품 저장시설 1만키이상, 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 3천톤 이상으로 규정함.
- (2) 석유민간비축수준의 제고를 위해 석유비축 의무 한도량을 현행 30일에서 60일로 상향조정함.

다. 석유유통구조개선 및 시장질서확립

- (1) 효율적인 석유유통구조 형성의 촉진을 위해 현

행법상의 3단계 유통구조(정유사-대리점-주유소·일반판매소)를 자율화함.

- (2) 새로운 형태의 석유판매업 수요에 부응하여 특수판매소의 법적근거를 신설함.
- (3) 석유사업자의 건전한 석유유통질서 저해행위를 구체화 함.

라. 석유품질관리제도 보완

- (1) 석유정제업자 등의 석유제품의 품질규격 공시 세부절차 규정을 신설하고 유사회발유 적발시 영업정지에 같은한 과징금 처분이 가능토록 개정함.
- (2) 석유제품 품질검사 수수료를 정율제에서 정액제로 전환하고 석유제품품질기준을 고시에 규정할 수 있도록 함.

마. 석유부과금 제도개선

- (1) 일정기준 이하 소액수입부과금의 징수제의 근거를 마련함.
- (2) 발전용 LPG공급의 경우 수입부과금 환급 대상으로 인정함.

바. 기타사항

- (1) 10만키이하의 자기사용 석유수입 등에 대해서는 수출입업 등록을 면제함.
- (2) 석유사업자의 조건부 등록시 사업개시 기간(1~3년)을 설정함.
- (3) 석유정제업 및 수출입업의 저장시설요건 미달시 과징금 부과기준을 설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1996년 9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상산업부장관(문의처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석유정책과 503-9657)에게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